

2019년 한류 콘텐츠 지재산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2차) 공고

해외 진출(예정) 콘텐츠 관련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지원을 위한 「2019년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10.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목 적

- 한류 콘텐츠 및 파생 상품에 대한 기획부터 수익화에 이르는 지재산 보호 전략 제공으로 우리 콘텐츠기업의 지재산 보호 역량 및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2. 지원 대상

- 해외 진출(예정) 문화 콘텐츠 관련(기획, 제작, 유통, 상품화 등)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문화콘텐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
- ※ **참여기업** : 신청 콘텐츠에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은 기업규모의 제한없이 신청기업과 함께 컨설팅 지원에 참여 가능(예시 : 문화산업전문회사, 콘텐츠 라이선서 등)
- 해당 콘텐츠 관련 해외 지식재산권이 현재 또는 향후 지원기업 또는 참여기업에게 일부 또는 전부 귀속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콘텐츠 유통·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콘텐츠 자체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만 지원 가능
 - ※ 예시 : 웹툰서비스 플랫폼은 웹툰 콘텐츠 자체의 보호가 아니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콘텐츠 및 파생상품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컨설팅 비용의 70%(과제당 최대 42.7백만 원)
 - 기업규모별 기업부담 현금·현물 비율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70%	10%	20%
중소기업	70%	20%	10%

- ※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컨설팅 수행기관의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
- ※ 현물은 컨설팅 기간 중 컨설팅을 위한 지원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지원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약 4개월

○ 지원 유형

지원 유형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기획 단계 (필수)	콘텐츠가 제작 중이거나 완성된 경우(배포·유통 중인 경우 포함)	콘텐츠 기반 해외 진출, 상품화(상품 디자인 포함) 전략 및 해외 지식재산보호 전략 제공
수익화 단계 (선택)	계약 콘텐츠 관련 해외 판권계약 등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분석 및 수정안 제시를 포함한 해외 라이선스 전략 제공
	대응 해외 지식재산권의 제3자 선점, 모조품 유통 등 콘텐츠 관련 해외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선점당한 해외 지식재산권의 회수, 취소, 무효전략 또는 권리행사 전략 제공 모조품 유통 대응을 위한 권리행사 전략 제공

※ '계약' 및 '대응' 지원유형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기획단계 지원유형과 동시신청만 가능

○ 지원(컨설팅 제공) 방법

- 선정된 지원기업은 보호원에 사전 등록된 컨설팅 전문기관 중에서 컨설팅을 수행할 기관을 직접 선택
- 컨설팅은 원칙적으로 IP전문기관¹⁾이 상품화전문기관²⁾을 활용하여 함께 수행
- 예외적으로, 지원기업이 자체적으로 콘텐츠 상품화를 추진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 IP전문기관의 단일 컨설팅 수행 가능

- 1) IP전문기관 : 콘텐츠·파생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IP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법무법인(사무소) 또는 IP서비스업체를 의미함
- 2) 상품화전문기관 : 콘텐츠·파생상품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제품디자인, 해외시장조사, 라이선싱 관련 업체 등을 의미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 6. 10(월) ~ 7. 9(화)
-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일체 이메일(ipkc@koipa.re.kr) 제출
- 제출 서류 목록

No	구분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별지 제2호	지원기업 신청서	1부	
2	제2-1호	컨설팅 지원 신청 세부사항	1부	
3	제2-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제2-3호	한류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신청 및 동의서	1부	* 협약 체결시, 원본 제출
5	-	사업자등록증	1부	* 참여 기업도 제출
6	-	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 증명서	1부	* 참여 기업은 제출불요
7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 경우만 제출
8	-	대상 콘텐츠 관련 자료	1부	* 양식자유
9	-	콘텐츠의 제작(국내외)유통계약상품화 라이선스 등 현황 자료	1부	* 양식자유
10	-	신청 유형 중 선택 항목(계약 또는 대응)근거 자료	1부	* 양식자유
11	-	가산점 해당 증빙자료(타기관 지원사업 협약서, 우대지역 진출 계약서, 계약의향서 등)	1부	* 가산점 해당 시 제출
12	-	상품화 관련 실적		* 특허 법무법인(사무소)의 단독 수행기관 구성을 선택한 기업만 제출
13	-	대상 콘텐츠 및 연계상품 관련 해외지식재산권 (저작권을 제외한 상표, 디자인 특허 등)이 지원 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귀속(예정)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등)	1부	* 지원 신청기업이 원 창작자가 아닌 경우 제출
14	-	기타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자료		

※ 이메일 제출 시 1개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파일명 : 지원기업명.z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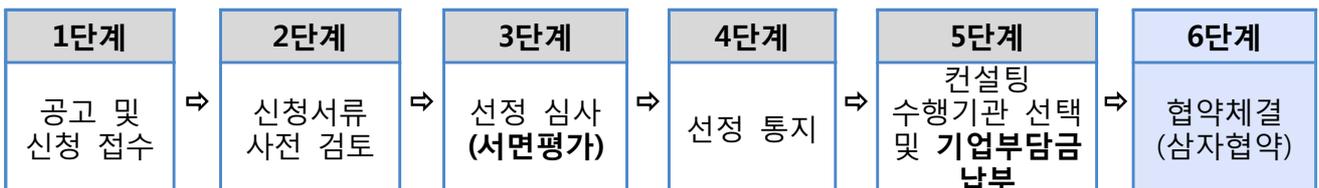
※ 제출서류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파일명에 표시

※ 첨부자료는 기업 선정심사 자료로 활용되므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제출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표시는 생년월일까지만 표시

5. 선정절차 및 선정심사기준

- 선정절차



[단계별 주요 내용]

- ① **신청 접수**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이메일 접수(ipkc@koipa.re.kr)
- ② **신청서류 사전 검토** : 보호원 담당자가 신청 자격, 참여제한 여부, 첨부서류 누락 등 사전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요청, 보완요청 불응시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
- ③ **선정 심사** : 서면 평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지원기업 선정 심사표에 따라 지원 여부 심사
- ④ **선정 통지** : 선정 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지
- ⑤ **컨설팅 수행기관 선택 및 기업부담금 현금 납부**
 - 선정된 지원기업은 보호원에 사전 등록된 컨설팅 전문기관 중에서 컨설팅 수행기관을 직접 선택
 - 선정기업은 보호원에 기업부담금 현금 납부(선정 통지일로부터 약 3주 이내)
- ⑥ **협약체결** : 삼자협약(보호원-지원기업-수행기관) 체결

○ **선정심사기준 등**

- (심사항목) 지원기업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적절 여부, 상품화 전문기관 투입 필요성, 컨설팅 비용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서면 심사

* 별첨 1.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 심사표** 참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콘텐츠의 우수성 및 성과	(내용) 콘텐츠 내용, 디자인, 스토리, 영상 등 콘텐츠의 우수성 정도	15
	(성과) 콘텐츠 매출 성과, 투자유치 노력 등 성과 정도	5
지원 시급성	(상품 유형) 국내외 콘텐츠 제공 정도 (계약) 계약 추진 정도 (대응) 해외 지식재산 피해 발생 정도	30
상품화 가능성	상품화 계획(투자, 라이선스 등)의 구체성 정도	20
지원 파급성	지재권 기반 상품화로 인해 동종 업계에 미치는 영향 정도	10
해외진출 가능성	해외 진출 추진 정도	20
가산점 (중복 적용 불가)	① 콘텐츠 관련 업무협약 체결 기관의 지원사업 수혜기업 ② 중국 이외 지역(대만, 일본, 북미, 유럽 등) 진출(예정) 게임콘텐츠	5
총점(※ 최대 100점)		

- (가산점항목) 신청기업이 ①콘텐츠와 관련하여 특허청 또는 보호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지원사업 수혜기업이거나 ②중국 이외의 해외 시장(대만, 일본, 북미, 유럽 등) 진출(예정) 게임 콘텐츠 관련 기업인 경우, 선정심사시 가산점 5점 부여(중복 적용 불가)

※ **가산점 해당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예시 : 타기관 지원사업 협약서, 게임 관련 우대지역 진출 계약서, 계약의향서 등)

- (선정 방식) 선정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하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가산점이 부여된 기업 ②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고득점을 받은 기업 순서로 지원기업 선정
- (선정 결과)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 이메일 통보

6. 유의사항

- 기업당 지원 횟수는 연 1회로 제한함
- 신청기업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이어야 함
-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협약체결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제출
- 신청기업은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현재 보호원 또는 특허청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 컨설팅 비용은 지원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의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기업은 향후 3년간 성과관리 및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비협조시 향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라 수행되며, 선정된 기업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선정 통보를 받은 기업이라도 협약체결 전까지 기업부담 현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협약체결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됨
- 선정 기업이 해산, 폐업, 부도 등으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위 신청서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지원기업의 태만으로 기한 내 과제 완료가 불가능하거나 지원금의 부당 사용 등 기타 협약의 해제·해지 사유 발생시, 지원금의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 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 민. 형사상 조치와 함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 부정행위 적발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식문화팀
 - 문의처 : 02-2183-5891, 5893 / jhkim@koipa.re.kr, bonjour@koipa.re.kr
 - 주 소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식문화팀